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69

발의연월일: 2020. 8. 19.

발 의 자:조승래·김민기·안민석

이상헌 · 강선우 · 박찬대

최종윤・설 훈・박광온

김상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가능하도록 하고,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73조의2 및 제11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2(원격 출석)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에게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.

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1조의2(비대면 표결)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표결 에 참가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73조의2(원격 출석) 감염병 확
	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에게
	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
	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
	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
	으로 출석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111조의2(비대면 표결) 제111조
	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
	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
	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
	원격으로 표결에 참가할 수 있
	<u>다.</u>